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31일, 박홍배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12.)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최근 폭염 · 한파 ·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 · 한랭 ·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
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1. 비용추계서

없음

12. 기타 사항

없음